2014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문 주제**: 남북관계 또는 통일과 관련된 법적 문제(자유주제)

주요내용 예시

- 남북 법률통합의 실질적 준비를 위한 과제
-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관련 법률 문제

2 **응모 자격**

● 전국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생, 법조인

③ 응모 일정

- 접 수 기 간 : 2014. 9. 1.(월) ~ 9. 19.(금)
- 수상자 발표 : 2014. 10. 10.(금), 개별통보 및 법무부 통일법무과

홈페이지(www.unilaw.go.kr) 게시

● 우수논문 시상 : 2014. 10. 15.(수)

4 시상 및 특전

구 분	시상편수	포상내용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당선작은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계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 (2014년 11월호)에 게재
- 통일법무과 발간자료 배포 및 인턴 지원시 우선적 고려 등 전문성 제고 지원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자우편 접수 : "yh.k@daum.net" 으로 전자우편 발송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공모_(이름)"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파일, 재학(재직)증명서
 -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는 스캔(pdf파일) 후 첨부하여 논문파일과 함께 발송
 - ※ 파일명: 논문파일 "(이름)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이름)_공모신청서.pdf"
 재학(재직)증명서 "(이름) 재학(재직)증명서.pdf"
-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861, 3231)
- 6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7 유의사항

-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 또는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창작논문이어야 함
- 심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 되거나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품이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 조치함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고,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귀속되며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음
- ※ 첨부 : [별지1] 통일법제 논문 공모신청서 1부.
 [별지2] 원고 작성 방법 1부. 끝.

[별지1]

통일법제 논문 공모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논문제목		

※ 위 본인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고문의 "⑦ 유의사항" 항목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공모 담당자 귀하

원고 작성 방법

- 1.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흔글'(.hwp)로 작성한다.
- 2. 원고는 <u>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초록</u>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을 <u>모두</u> <u>포함하여 A 4 용지 20~25매</u>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을 기재한다.
- 4.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본문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각주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 5. 본문은 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 6.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 7.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 8.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가. 단행본: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나.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명, 간행연월, 면수
 - 다. 판례: 대법원 2000.00.00.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2000년, 000면) 또는 대판 2000.00.00, 00다0000
-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10.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